

감사위원회 규정

2018 . 3 . 30 . 제정

2021 . 5 . 17 .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2.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상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권한 및 의무

제11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13조(전담부서 설치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이사과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